##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77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 송옥주・박 정・전종덕

한민수 • 윤준병 • 이수진

한정애 • 김남희 • 추미애

박해철 • 박선원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의 금지와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을 두어, 동물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고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공유하는 행위 등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유기 동물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도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

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동물을 유기한 경우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함으로써 동물학대행위 등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등).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2항제2호 중 "맹견"을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 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7조(벌칙) ① (생 략)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2
여 <u>맹견</u> 을 유기한 소유자등	<u>동물</u>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u> &lt;신 설&gt;</u>	1.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
	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u>•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u>
	<u>터넷에 게재한 자</u>
<u>1.</u> (생 략)	<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5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	<u>&lt;삭 제&gt;</u>

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
  전시 전달 상영하거나인터넷에 게재한 자
- 3. ~ 12. (생 략)

<u><삭 제></u>

3. ~ 12. (현행과 같음)